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됨에 따라 정보망을 통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 5 제2호아목 5) 신설)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7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을 “(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법 제21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법 제21조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나)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하고, 같은 목 2)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마목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위반행위란 아목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700
--	-----	-----	-----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u>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u> <u>면조사 생략</u>) 법 제21조제1항제		제30조(<u>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u> <u>조사 생략</u>) 법 제21조제2항제1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호</u> -----		
☒☒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		-----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		-----		
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		-----		
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1조(<u>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u> <u>면조사 생략</u>) 법 제21조제1항제		제31조(<u>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u> <u>면조사 생략</u>) 법 제21조제2항제		
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u>3호</u> -----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		-----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		
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		
말한다.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연 락 처	(044) 201 - 6817